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치원 자녀 보육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등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권장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혁 연기' 선언 등에 따라 유치원 자녀들의 보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유치원 자녀를 둔 공무원 학부모가 자녀 양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복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에서는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시·군·구 및 산하기관에도 동 내용을 반드시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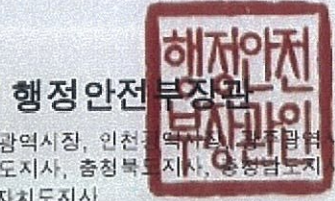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6(특별휴가)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끝.



행정안전부

수신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사무관 이정와 지방인사제도 선결(2019.3.3.)
 과장 채수경

협조자

시행 지방인사제도과-1000 (2019. 3. 3.)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357 팩스번호 044-204-8953 / jeongwa@korea.kr / 대국민 공개